

제61차 방송통신위원회 회의록

1. 회의일시 : 2016. 11. 3.(목) 14:10

2. 장 소 : 방송통신위원회 4층 회의실

3. 참석위원 : 최성준 위 원 장
김재홍 부위원장
이기주 상임위원
고삼석 상임위원 (4인)

4. 불참위원 : 김석진 상임위원 (1인)

5. 회의내용

① 성원보고

② 국기에 대한 경례

③ 개회선언

④ 서면회의 결과 확인

- 제59차 서면회의 결과 <의결안건> 1건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며, 제60차 서면회의 결과, <의결안건> 1건이 원안대로 접수되었음을 보고함

⑤ 회의공개 여부 결정

-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4항에 따라 공개로 회의를 진행함

⑥ 의결사항

가.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(2016-61-222)

- 방송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(주)티브로드 중부방송 등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사전동의 여부를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고,

- 미래창조과학부의 (주)티브로드 중부방송, (주)딜라이브 우리케이블티브이 및 제이씨엔올산중앙방송(주) 재허가에 대해 재무건전성 악화 방지, 방송의 공익성 강화 등을 위해 미래부의 재허가 조건과 함께 재허가시 제출한 지역채널 투자계획의 성실한 이행 등 재허가 조건과 공익·장애인복지 채널을 아날로그 저가 상품에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는 등의 권고사항을 부과하여 재허가에 동의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

나. 위치정보사업자 신규 허가에 관한 건 (2016-61-223)

- o 「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」 제5조(위치정보사업의 허가 등)에 따라 금년도 제4차 위치정보사업 허가신청법인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박노익 이용자정책 국장으로부터 보고 받고 심의한 결과,
 - 두산인프라코어 주식회사, 메르세데스 벤츠코리아 주식회사 등 2개 법인에 대해 신청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이행, 위치정보보호법 관련법령 준수 등 조건을 부과하여 허가하기로 하고,
 - 주식회사 아트엘비에스, 주식회사 하나씨티피에 대해 허가를 거부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함

☑ 기 타

가. 차기 회의 일정에 관한 사항

- o 차기 회의는 11월 11일(금) 9시 30분에 개최하기로 함

6. 폐 회 (14:43)